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601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601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624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명진, 유가희

변론종결 2021. 11. 19.

판결선고 2022. 1. 1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624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1. 피고 B과 D(E생) 사이에 2019. 8. 2.자로 체결된 14,5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9. 8. 16.자로 체결된 3,2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 즉 원고가 F을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1904호, 2019차1220호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이 통정허위에 의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집행채권이 통정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2)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H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인 2019. 8.경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겐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1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채무자 D의 처분행위 당시 D가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였음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위 각 처분행위 당시 D의 무자력은 다툼없는 사실이 되어 피고에게는 재판상 자백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D로부터 받은 2019. 8. 2.자 1,450만 원과 2019. 8. 16.자 320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줄곧 D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며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20. 11. 5.자 준비서면에 ‘D가 피고의 자동차 할부금, 피고의 기타 채무를 갚아주고자 2019. 8. 2. 자로 피고의 농협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해 주었고 2019. 8. 16.자로 이루어진 3,200,000원 또한 위와 같은 사유였고(위 준비서면 4면 하단부터 5면 상단까지), D가 피고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자동차 할부금 등을 지원하였다(위 준비서면 9면 4항)’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고의 2020. 12. 2.자 준비서면의 ‘다. 망인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항에서 ‘피고들은 2020. 11. 5.자 준비서면에서 ① 피고 B에 대한 각 2019. 8. 2.자 14,500,000원, 2019. 8. 16.자 3,200,000원의 증여는 피고 B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 것3) 이라고 밝힌 바 있다(위 준비서면 4면)’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원고에게 송달된 위 각 준비서면을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D가 피고에게 2019. 8. 2.자 1,450만 원과 2019. 8. 16.자 320만 원을 준 것은 증여'라는 사실을 재판상 자백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판사 허준서

1)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피고 B 부분만 기재한다.

2) 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특히 갑61호증)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집행채권이 통정허위에의한 채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하 ② 항 부분은 생략한다 .